

1. 개정이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추가된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 및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자·체류 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에 ‘외교부’ 추가(안 제28조의2)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교부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에 외교부 추가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강사 활동 범위를 확대(안 제53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8조)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용이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범위를 확대

다.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의 명확화 및 해외 거주 외국인을 포함
(안 제53조의5)

현행 규정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결혼이민자·계절근로자·외국국적동포·외국인근로자·유학생 등으로 명확히 하고,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증발급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을 추가

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설치·운영(안 제53조의6)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의 운영 근거를 마련

마. 통보의무면제 대상에 ‘선원근로감독관’ 추가(안 제70조의2제5호)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 선원을 발견한 경우 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 상의 ‘선원근로감독관’을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

바. 재외공관 및 국내에서 비자·체류 관련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전자결제’까지 확대(안 제73조)

출입국관서 및 재외공관 민원 수수료의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비자·체류 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교부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제53조의2제2항제3호 중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영 제4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제6호 중 “결혼이민자”를 “외국인”으로 한다.

제53조의5의 제목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외국인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혼이민자 · 계절근로자 ·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근로자 · 유학생 등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유학 · 연수 · 투자 · 주재 · 결혼 등의 목적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 정서를 신청한 사람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를 각각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2까지로 하고, 제5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6(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 지정·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이하 “이민자 멘토링”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민자 멘토링의 내용, 운영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12(중전의 제53조의11) 중 “제53조의10”을 “제53조의11”로, “사회통합위원 및”을 “이민자 멘토링, 사회통합위원 및”으로 한다.

제70조의2제5호 중 “제19호까지의 법률”을 “제19호까지,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표”를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신용카드·직불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표”를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89조”를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89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정책협회의 위원장은 법무 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② ----- ----- ----- ----- -----.
<u><신 설></u>	<u>1. 외교부</u>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u><신 설></u>	<u>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명 하는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앙행정기관</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 영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 영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 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 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u> <u>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u>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3. <u>영 제48조제1항제3호부터 제</u> <u>5호까지에 따른</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 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 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3조의5에 따른 <u>결혼이민</u> <u>자</u>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 한 프로그램 운영	6. ----- <u>외국인</u>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의5(<u>결혼이민자 등의 조기</u> <u>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u>) ① 법무부장관은 <u>대한민국에 결혼</u> <u>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u> <u>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u>	제53조의5(<u>외국인 등의 조기 적응</u> <u>지원을 위한 프로그램</u>) ① ---- ----- <u>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

1. 결혼이민자·계절근로자·외국국적동포·외국인근로자·유학생 등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유학·연수·투자·주재·결혼 등의 목적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6(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 지정·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이하 "이민자 멘토링"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u>② 제1항에 따른 이민자 멘토링의 내용, 운영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u>
제53조의6 ~ 제53조의10 (생략)	제53조의7 ~ 제53조의11 (현행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와 같음)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사회통합위원</u>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12(세부 운영사항) ----- ----- <u>제53조의11</u> ----- ----- <u>이민자 멘토링, 사회통합위원 및</u> ----- ----- -----.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u>제19호까지의 법률</u> 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채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5. ----- ----- ----- ----- <u>제19호까지,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u> ----- ----- -----

6. (생략)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생략)

2.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6. (현행과 같음)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

---.

1. -----

-----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 -----
-----.
-----.
가. -----

----- 증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나. (현행과 같음)

2. -----

----- 수입증지,
신용카드·직불카드 -----

3. -----

납입을 증명하는 <u>증표</u>	----- <u>증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u>
---------------------------	--